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62회 1차 정례회

# 검토 보고서

2023. 6. 12.(월)

검 토 안 건	발 의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	구청장



복지도시위원회  
(전문위원 장홍용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(안)”

#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장홍용)

## 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마포구청장(어르신동행과)
- 제안일 : 2023. 5. 19.
- 회부일 : 2023. 5. 25. (의안번호 : 23-69)

## 2. 제안이유

- 기존 조례에 불분명하게 표현된 용어 및 내용을 명확히 정비하고, 사업의 위탁운영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노인급식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함

## 3. 주요내용

- 조문의 내용이 분명해지도록 조문의 제목 및 내용 수정  
(안 제3조제1항, 제5조제1항)
-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히(운영자→급식기관) 하고, 공개모집 외 불필요하게 규정된 우선선정 내용 삭제(안 제6조, 제7조)
- 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사업의 위탁 규정 추가(안 제8조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노인인복지법」, 「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노인복지 기본 조례」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입법예고 : 4. 20. ~ 5. 10.(제출된 의견 없음)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기존 조례에 불분명하게 표현된 용어 및 내용을 명확히 정비하고, 사업의 위탁운영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노인급식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  -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지원대상 선정과 안 제5조제1항 조문 제목을 ‘운영’에서 ‘급식방법’으로 수정하여 내용이 분명해 지도록 조문의 내용 및 제목을 수정하고,
  -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조문 제목을 ‘운영자 모집’에서 ‘급식기관’으로 수정하고, 불필요하게 규정된 우선선정 내용을 삭제하며,
  - 안 제8조에서는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사업의 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.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, 「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」 제7조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10조 등에 근거하여 관계법령 및 법규에 위반되는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
- 안 제3조와 관련, 지원대상 선정 시 소외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, 안 제8조 관련, 마포구 출연기관, 비영리법인,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경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, 사업에 필요한 비용지출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- 아울러 비용추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약 210억원의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일반회계 재원으로 재정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세외수입 분석과 후원금 모금 등 종합적인 검토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 참고 자료

### 1. 관련법령

#### 노인복지법

-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**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#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

- 제7조(건강증진)** ①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9.30>
1. 노인 건강검진 사업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
  2.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
  3.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
  4.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
  5. 보건교육과 건강상담
  6. 자살, 우울증,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
  7.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
  8.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,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
- 제10조(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) ① 구청장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,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(이하 "취약계층 노인 등"이라 한다)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보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.